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년월일 : 2000. 4.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국 총무과

□ 제안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용중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안 제2조)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 '00.1.28 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62호, '00.3.2 개정)

□ 개정 조례안 : 복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복임
- 관계법령 : 복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2,828명”을 “2,82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2,815명”을 “2,810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2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1호서식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호”를 “법 제36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7조 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u>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828명</u> 으로 그 내 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u>2,823명</u>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 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u>2,815명</u>	1. (현행과 같음) 2. <u>2,810명</u>

관 계 법령

● 법률 제621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의사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의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제20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33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들 수 있다.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시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전화 (043)279-0229 /전송(043)271-869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과장 박영하 사무관 연승희 담당자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 - 78

시행일자 2000. 03. 31.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임 교육감	上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0. 3. 31.	교육감 3/31
번호	180	기획관리과장 3/31
처리 과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장 3/31
담당자	김 예석	의회담당 3/31
심사자		심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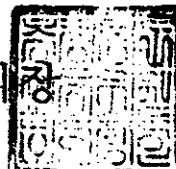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사결과
111-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1-5	2001학년도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계획안	원안가결
111-6	학교설립계획안	원안가결
111-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111-8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0 - 32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3월

충청북도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억 9,159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08억 8,156만 6천원 증액 ○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억 815만 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923만원, 급여·복지 39억 4,032만 3천원, 교육행정 32억 2,604만 4천원, 기타경비 403만 1천원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겸진 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부의안건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기간 확대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확대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 ○ 군입대에 위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부의안건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증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